

주간 규제 정보

Vol. 380

2022. 01. 03 ~ 2022. 01. 09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 1.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3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 2.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4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 3.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4. UAE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10
- 5.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1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6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8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 (KC 60335-2-7) 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통상 동작시 표면 재질·위치별 온도상승 기준 추가
 - * (재질) 금속·유리·세라믹·플라스틱 (위치) 전면,기타표면,바닥으로부터 거리
 - 과부하 운전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 * 온도상승 조건하에서 1사이클 동안 전류가 10% 증가하도록 부하를 증가시켜,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동기가 멈출때까지 시험 실시
 - 도어의 내부열림력 기준* 완화 및 증기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 경첩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93N→70N)을 가하여 판정
 - ** 누수 또는 증기의 분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없는 구조여야할 것
- (KC 60335-2-23)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오류사항* 수정 및 특정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 (기준) 옥조 등에 사용하기 적합 → (개정)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 (모발손질기)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발관리기) 누수 및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 바닥·테이블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 추가
 - * 수평에 대하여 10도로 기울인 평면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함(전열기기는 15도)
 -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한 표면부 식별 조건 추가
 - *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촉각·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조 요구
- (KC 60335-2-80)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 (천장형 팬) 비정상 동작시 경고사항, 유지보수 방법 및 설치 시 주의사항
- ** (브러시 포함 전동기 내장팬) 브러시 교체 시 주의 사항
- 끼임이나 상해 위험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 끼임 지점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끼임 지점에 적용되는 힘은 15N 이하로 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12.31.)까지 병행 적용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2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 사전신고·조건부 검사 제도 등 동영상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 ('21년) 축산물 수입신고(약 11만 8,000건) 중 사전 수입신고 595건, 조건부 수입검사 30건
 -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통관검사 결과 확인 전이나 보완 전에는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21년) 축산물 실험실 검사용 검체 약 8,000건 중 잔여검체 반환은 약 200건

-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 현재 호주산 식육을 수입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동영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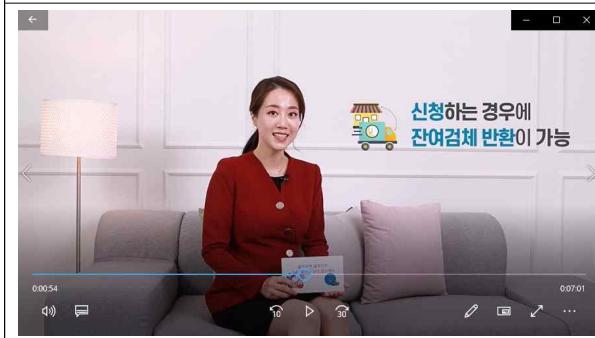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동영상



사전 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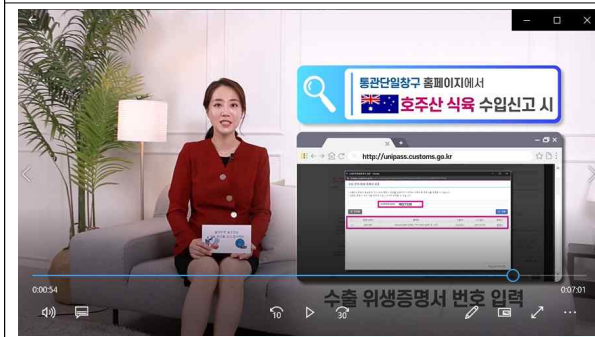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검체 반환



민간 시험검사기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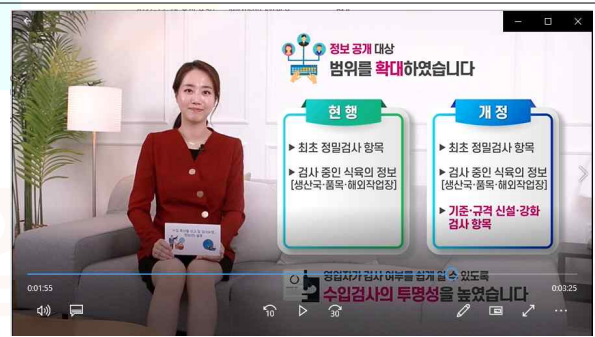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개선1. 해외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2. 부적합 축산물 검사강화



제도개선3. 정보공개 확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3.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7종) 지정 해제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7	Glycerol	56-81-5	1-가. 살균제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2027.12.31.
44	Benzotriazole	95-14-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76	Do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112-00-5	1-가. 살균제	2022.12.31.
97	Tributyl phosphate	126-73-8	1-가. 살균제	2022.12.31.
114	Sodium hydrogencarbonate	144-55-8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120	Calcium carbonate	471-3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26	Sodium chloride	7647-14-5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269	Origanum oil	8007-11-2	1-가. 살균제	2022.12.31.
271	3,7-Dimethylocta-1,6-dien-3-ol; 2-(4-Methylcyclohex-3-en-1-yl)propan-2-ol; 1-Methyl-4-propan-2-ylbenzene; 4-Methyl-1-propan-2-ylbicyclo[3.1.0]hexan-4-ol; 5-Methyl-2-propan-2-ylphenol; Thyme oils	8007-46-3	1-가. 살균제	2022.12.31.
279	Catalase	9001-05-2	1-가. 살균제	2022.12.31.
305	N,N'-ethylenebis[N-acetylacetamide]	10543-57-4	1-가. 살균제	2022.12.31.
359	Beauveria bassiana oil	26048-05-5	2-다. 살충제	2022.12.31.
375	Paraformaldehyde	30525-89-4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2.12.31.
392	4,4-Dimethyloxazolidine	51200-87-4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447	Cedarwood oil texas	68990-83-0	2-다. 살충제	2022.12.31.
575	Streptomyces griseofuscus	고유번호 없음	1-가. 살균제	2029.12.31.
586	Aluminium ammonium bis(sulfate)	7784-25-0	2-마. 기피제	2022.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일부해제

- 개정사유: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10”, “39”, “89”, “100”, “124”, “209”, “230”, “259”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의 지정을 해제함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0	Diphenoxarsin-10-yl oxide	58-36-6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2.12.31.
39	2-Isopropyl-5-methylphenol; Thymol	89-83-8	2-다. 살충제	2022.12.31.
89	Benzyl benzoate	120-51-4	2-다. 살충제	2022.12.31.
100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3-0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24	2-Hydroxy-4-isopropyl-2,4,6-cyclohepta-2,4,6-trien-1-one	499-44-5	1-가. 살균제	2022.12.31.
209	1,3-Bis(hydroxymethyl)-5,5-dimethylimidazolidine-2,4-dione; Glydant	6440-58-0	1-가. 살균제	2022.12.31.
320	Barium diboron tetraoxide	13701-59-2	1-가. 살균제	2022.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529	Silver phosphate glass	308069-39-8	1-나. 살조제	2022.12.31.
			2-가. 살서제	2022.12.31.
			2-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2024.12.31.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12.31.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일부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31”, “149”, “153”, “233”, “259”, “353”, “369”, “442”, “492”, “530”, “535”, “552”, “553”, “554”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1	L-(+)-lactic acid	79-33-4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49	Calcium dihydroxide	1305-62-0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153	Hydroxylapatite	1306-06-5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23	Silicon dioxide; Synthetic amorphous silicon dioxide (nano)	7631-86-9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259	Eucalyptus extract	8000-48-4	1-가. 살균제	2022.12.31.
353	Zinc ion	23713-49-7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55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25068-38-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69	Polylysine	28211-04-3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442	Extract from tea tree , 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Oil	68647-73-4	2-마. 기피제	2022.12.31.
492	Synthetic amorphous silicon dioxide (nano)	112926-00-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530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394730-71-3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535	Oil of lemon eucalyptus	1245629-80-4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552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Alcohol / Phenol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553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Guanidine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554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Quaternary ammonium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라. [별표]의 연번 “8”부터 “594”까지를 “7”부터 “577”로 연번 변경

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연번 “578”부터 “583”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78	Lysozyme	9001-63-2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579	Iron(III) 1,3,5-benzenetricarboxylate hydrate	1257379-83-1	1-가. 살균제	2022.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2.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2.12.31.
580	Oils, rosemary	8000-25-7	2-마. 기피제	2022.12.31.
581	N,N,N',N'-Tetramethyl-1,2-ethanediamine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	31075-24-8	1-나. 살조제	2022.12.31.
582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ultraviolet rays	10049-04-4	1-가. 살균제	2029.12.31.
583	Performic acid generated from formic acid and hydrogen peroxide	107-32-4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241&menuNo=13002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4. UAE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으나, 외부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며 빠르게 회복 중 -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는 시장 -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품목명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91	가루형 제품류
330499	기타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UAE의 색조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비 16.5% 위축된 2억 4,125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로 립 메이크업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감소세(△20.6%)를 보이며 품목별 시장규모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한편, 색조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중 네일 품목의 판매 규모가 유일하게 소폭 상승(1.1%)했다. 네일샵, 살롱 방문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셀프케어가 유행하면서 관련 제품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차례 침체기를 겪은 UAE 색조화장품 시장은 2021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UAE 정부는 2020년 12월 시노팜, 화이자 백신 승인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백신 접종*을 추진하며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막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선언했다. 타국 대비 이른 워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UAE는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기도 했다. 경제활동 및 사교모임이 점차 활발해지자 색조화장품 소비도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Euromonitor는 2021년 UAE 색조화장품 시장규모를 11.4% 성장한 2억 6,876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2년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 주 : 2021년 11월 24일 기준 UAE 1차 백신 접종률은 99.82%, 접종 완료율은 90.02% (자료 : UANational Crisis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단위 : US\$ 백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87.50	289.06	241.25	268.76	289.58	295.95
- 페이스메이크업	145.04	146.07	118.80	134.95	147.02	150.63
- 아이메이크업	49.57	49.14	39.58	44.98	49.14	50.73
- 네일	38.96	39.02	39.45	39.23	38.53	38.64
- 립메이크업	47.44	48.28	38.34	43.69	48.36	49.33
- 기타	6.48	6.56	5.08	5.91	6.53	6.62

주 : 2021년부터 전망치

[자료 : Euromonitor]

시장 트렌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메이크업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이 가려지면서 기존에 진한 눈 화장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아이섀도, 마스크라 등 아이 메이크업 제품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건 제품,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Cruelty-free’ 제품, 친환경 소재의 패키징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트렌드에 발맞춰 UAE 내 판매되는 비건 제품, Cruelty-free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내 비건 • Cruelty-free 화장품 소개 포스팅 예시>



Where to buy vegan make up in Dubai in 2021

We loved getting dolled up every now and again, but

By Dana Oufella | January 15, 2021

We loved getting dolled up every now and again, but chances are a lot of us haven't really considered where our makeup is coming from. Vegan beauty products contain no animal ingredients at all, omitting honey, beeswax, milk, and eggs, so you can look radiant while being safe in the knowledge that your beauty is totally ethical. These brands below all have vegan ranges so you can slip up to your heart's content with a clear conscience.

[자료 : Cosmopolitan, TimeOut]

드라마, 음악 등 K-콘텐츠가 중동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소비재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UAE 내 K-뷰티의 인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0명의 응답자 중 43%가 “매우 인기 있다(Very popular)”고 답했으며 28.3%는 “꽤 인기 있다(Quite popular)”, 17.3%는 “일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Popular to some enthusiast)”고 답변했다. 다양한 기능의 마스크팩, 세럼, 에센스 등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은 UAE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Sephora, Watsons, Powder 등 뷰티 제품 전문점에서도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색조화장품은 스킨케어 제품군 대비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수입동향

2020년 UAE의 색조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비 46% 가량 줄어들며 5억 6,779만 달러에 머물렀다. 2020년 기준 UAE의 색조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1억 4,311만 달러), 미국(8,526만 달러), 독일(4,768만 달러) 등으로 상위 3개국만 전체 수입 시장의 약 49%를 차지했다. 한편, 對한국 수입액은 2,693만 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색조화장품 수입 상위 10개국>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	-----	-----	----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036.96	1,057.19	567.79	100.00	100.00	100.00
1	프랑스	212.90	219.70	143.11	20.53	20.78	25.21
2	미국	197.11	187.09	85.26	19.01	17.70	15.02
3	독일	87.36	76.90	47.68	8.42	7.27	8.40
4	이탈리아	107.84	101.15	29.17	10.40	9.57	5.14
5	영국	44.69	47.86	27.05	4.31	4.53	4.76
6	대한민국	28.23	31.18	26.93	2.72	2.95	4.74
7	중국	44.76	42.37	25.10	4.32	4.01	4.42
8	폴란드	29.79	40.76	19.40	2.87	3.86	3.42
9	스페인	25.67	27.68	18.54	2.48	2.62	3.26
10	네덜란드	1.15	1.60	9.60	0.11	0.15	1.69

주 : HS Code 3304 기준

[자료 : ITC Trade Map]

경쟁동향

UAE 색조화장품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 Mac, Dior, Chanel이 주도하고 있으며 3개사의 점유율이 20%를 상회한다. 그 외 Lancôme, Givenchy, Bobbi Brown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중저가 브랜드로는 Max Factor, Rimmel, Maybelline 등이 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는 에뛰드, 더페이스샵 등이 현지 쇼핑몰에 단독 매장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Shofon, Lamise, K-Secret 등 일부 현지 기업에서 한국 제품을 주요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다.

<내 주요 색조화장품 예시>

브랜드	제품예시	
Mac	 <p>제품명 : STUDIO FIX FLUID SPF 15 가격 : AED 180</p>	 <p>제품명 : EXTRA DIMENSION SKI NFINISH X 4: R PICKS 가격 : AED 290</p>
Dior	 <p>제품명 : Rouge Dior Forever Liq uid 가격 : AED 184</p>	 <p>제품명 : DIOR BACKSTAGE EYE PALETTE 가격 : AED 235</p>

<p>Rimmel</p>	 <p>제품명 : Rimmel London Scandaleyes Wow Wings Mascara 가격 : AED 55.19</p>	 <p>제품명 : Rimmel London Stay Matte Liquid Mousse Foundation 가격 : AED 66.7</p>
<p>Maybelline</p>	 <p>제품명 : Maybelline Eraser Eye Concealer Light 가격 : AED 69</p>	 <p>제품명 : Maybelline New York The Colossal Big Shot Washable Mascara 가격 : AED 89</p>
<p>Etude</p>	 <p>제품명 : Play Long Shine Nail 가격 : AED 30 (개당)</p>	 <p>제품명 : Mirror Holic Liquid Eyes 가격 : AED 70 (개당)</p>
<p>The Face Shop</p>	 <p>제품명 : Water Fit Lip Tint 가격 : AED 48</p>	 <p>제품명 : Pastel Cushion Blusher 가격 : AED 50</p>

주 : AED 1 = US\$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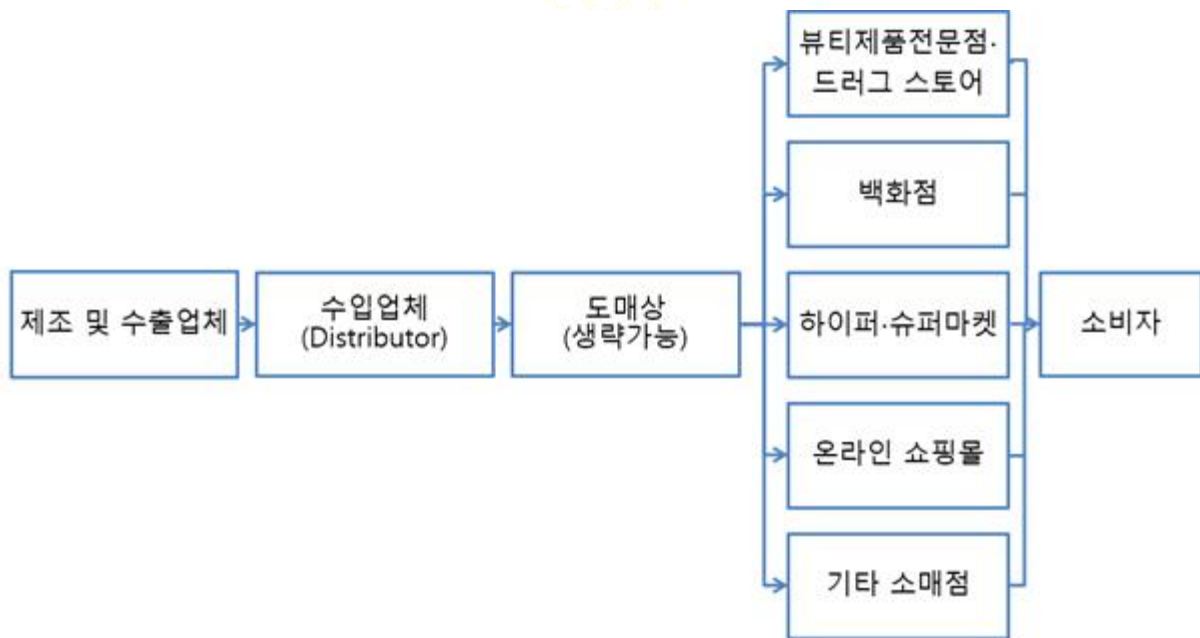
[자료 : Carrefour 및 각 브랜드 웹사이트]

유통구조

UAE의 색조화장품 주요 유통채널은 Sephora, Faces(Wojoo), Boots 등 드러그 스토어 및 뷰티 제품 전문점으로 전체 색조화장품 판매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Bloomingdales, Galleries Lafayette 등 백화점, 매스 브랜드(Mass brand) 제품의 경우 Carrefour, Spinneys와 같은 하이퍼·슈퍼마켓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지며 전자상거래 판매도 급증했다. Powder, Shofon 등 뷰티 전문 온라인 쇼핑몰과 더불어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글로벌 뷰티 브랜드인 Dior 등도 온라인 쇼핑몰을 론칭한 바 있다.

UAE는 통관 및 인증 취득 과정에서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국외 기업의 단독 진행이 불가하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사(수입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이 제품 등록, 인증 취득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 기업의 보유 거래처를 토대로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업체 선정 시 기업 담당자의 적극성, 주요 유통채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색조화장품 유통구조>



[자료 : KOTRA 두바이 무역관 작성]

적용 세율 및 인증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GCC 관세협정에 따라 HS Code 330410, 330420, 330430, 330491, 330499 품목 모두 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5%가 적용된다.

(제품등록 및 인증)화장품의 경우 UAE 산업과 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가 제시하는 적합성 인증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취득 의무 대상이다. 국외 기업의 경우 유효한 트레이드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사를 선정하여 ECAS 인증 취득 절차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 : 기존 ECAS 인증을 제정, 관장한 기관은 UAE 표준측량청(ESMA)으로 독립된 정부기관이었으나, 2020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산업과 첨단기술부로 통합됨.

시사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UAE의 색조화장품 시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약 2억 9천만 달러에 달해 코로나19 발생 전의 시장규모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UAE 내 K-Beauty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 색조화장품의 성장세는 다소 더딘 편이다. UAE 뷰티 제품 전문 판매기업 A사의 관계자는 “한국의 화장품은 고품질의 스킨케어 제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색조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낮은 편인데, 한국의 대중적인 화장법과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화장법이 다르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UAE에는 다양한 인종,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 그만큼 색조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다. 따라서 더욱 다채로운 색상의 제품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주었다. 더불어 UAE 시장에 색조화장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색조화장품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피부색과 결 등에 따라 발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등 실제 사용 모습을 노출시킬 경우 제품 홍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에서는 매년 중동 최대 뷰티산업 전시회인 Beautyworld Middle East가 개최되고 있다. 동 전시회는 글로벌 뷰티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트렌드 공유,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제고,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회의 장이다. 다음 Beautyworld Middle East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한국 기업은 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Beautyworld Middle East 웹사이트 :

<https://beautyworld-middle-east.ae.messefrankfurt.com/dubai/en.html>

자료 : Euromonitor, ITC Trade Map, Statista, UAENational Crisis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5.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 2022년 1월부터 Facebook, Instagram, Zalo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기반 판매자들에게도 직·간접적 과세 및 징수
- 베트남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업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 대표 사무소 개설 혹은 현지 대리인을 등록하고 원천징수세액 신고 의무
- 사업자미등록·원천징수세액 미신고·세금 미납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은행 및 지불결제대행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간접 과세 예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상거래는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 중인 분야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보다 긴밀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메커니즘 및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 업데이트를 살펴본다.

조세행정에 관한 법령 개정

2020년 10월 19일자로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일부 세부사항 개정령(No.126/2020/ND-CP)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30조는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

사업(해외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규정한다.

<베트남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해외공급업자 간접세액 공제 방법>

사업자미등록 및 세금 미신고 해외 공급업자 세금 납부 규정	1	해외공급업자가 베트남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업은행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SPs) 업체는 해외공급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거래 활동에 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2	해외공급업자의 대금을 신용카드나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경우 상업은행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SPs)업체는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베트남 재무부 징수과에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조 제30항)
	3	상업은행-은행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SPs) 업체는 베트남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외공급업자가 제출한 월간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고한 세금을 정부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자료: 126/2020/ND-CP]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행정 위반 제재 조항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26일자로 '전자상거래 행정위반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생산·판매·금지상품·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 처벌 규정' (98/2020/ND-CP)을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185/2013/ND-CP)을 대체하며, 2015년 11월 19일자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시행령(124/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한다. 특히 제10조 제62항부터 제66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은 100만 동(5만 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4,000만 동(200만 원)이며 조직, 기관 및 기업이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주요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모바일 앱에 설치/연동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정보 제공/거래에 대한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평가·감독 및 인증에 관한 위반 행위
1백만 동~5천만 동 벌금 (한화 약 5만원~250만원)	1백만 동~5천만 동 벌금 (한화 약 5만원~250만원)	1백만 동~5천만 동 벌금 (한화 약 5만원~250만원)	1백만 동~5천만 동 벌금 (한화 약 5만원~250만원)	5백만 동~5천만 동 벌금 (한화 약 25만원~250만원)

[자료: 98/2020/ND-CP 제10부 제62조~제66조]

외국인투자자 조건부사업목록 개정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인 조건부 투자가 가능한 산업이다. 2021년 3월 26일 정부는 신규투자법(31/2021/ND-CP)을 공포해 조건부 투자 사업목록을 일부 개정하였다. 제2장 제2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제한,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 사업목록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기업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2021년 9월 25일 정부는 법령 85/2021/ND-CP를 공포하여 2013년에 발행된 시행령 2013/52/ND-CP를 개정 및 보완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1) 전자상거래 법 규제 적용대상 해외법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제 대상 해외법인은 투자법인, 지사 또는 대표 사무실 설립을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베트남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보유한 법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규제대상 해외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제67a조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해외 수출입자 및 기관>

1.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수출입자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a) 베트남의 도메인명으로 설치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 b) 베트남어로 표시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 c) 1년 만에 베트남에서 시작된 거래량이 10만건을 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c)와 관련하여 거래량 판정 기준은 관련 외국 법인의 보고서, 관세·세금·인터넷 관리·은행·국가 당국에 의해 검증된 공공 및 가용 보고서와 정보, 또는 베트남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법인의 공식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자료: 85/2021/ND-CP]

(2) 베트남 영내 해외 법인 규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페이지를 보유한 해외 법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현지 공식 대리인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나 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베트남 내 고객에게만 제한한다는 기존 법령(52/2013/ND-CP)과 다르다.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해외법인은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공식 현지 파트너사 대리인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3) 현지 공식 파트너 대표 위임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베트남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 무역업자에게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7b조 베트남 전자 상거래 거래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및 조직에 대한 규정>

1.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다.
2.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 거래자 및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책임 중 하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a)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무역업자에게 외국 무역업자의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한다.
 - b)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 또는 기관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위임한 수입 활동을 이행한다.
 - c) 해외 무역업자 및 기관이 베트남에서 상업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3.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 85/2021/ND-CP]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67c조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 a)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법 2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 b)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조건부사업목록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두 그룹에서 1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보안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이 조 2항 b항에 명시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 a) 기업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
 - b) 외국인투자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협의회 의장, 기업의 이사 또는 총무를 임명, 직무 면제 또는 해임에 직간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 외국인투자자는 기술 플랫폼 및 비즈니스 조직 형태의 선택을 포함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산업, 직업, 지리적 영역 및 사업 형태의 선택, 규모 및 비즈니스 라인을 조정하도록 선택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자본을 동원, 할당 및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자료: 85/2021/ND-CP]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기존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권을 갖지 않은 사업 협력 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선도기업 5개사에 속한 기업에 외국인투자자가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해외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스타트업 규모의 신생 중소기업일 경우 면제된다.

공안부가 실시하는 기업대상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수순을 밟는다. 만약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5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 이상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평가수순으로 인해 기존 대비 법적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규정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신규 규정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5조 2항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형태>

- (1)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전시,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열도록 허용
- (2)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
- (3)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게시하는 쇼핑 섹션을 보유한 경우

[자료: 85/2021/ND-CP]

이에 따르면 신규 규정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인스타그램(Instagram) 기반 링크 연결 쇼핑몰, 잘로(Zalo)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전자상거래 사업 FAQ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Q1. 베트남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1. 2005년 상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업활동이란 상품판매 및 구매, 서비스 제공, 투자, 상업진흥 및 기타 영리목적의 활동을 뜻합니다. 한편 2013년 개정 상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오픈소스망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으로 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본질은 여전히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이지만 판매 플랫폼이 오프라인 도소매점 또는 백화점 등이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이동통신망, 기타 오픈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구매 및 판매 행위를 뜻합니다.

Q2.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제공 요건은 무엇입니까?

A2. 52/2013/ND-CP 제 2조에 따르면 베트남 역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베트남인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 사업자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기업, 무역업자 및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개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조건>

- 수출입업자와 조직을 위한 관련 기능과 업무 또는 개인의 납세에 대한 개인사업자번호 부여
- 산업무역부에 판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등록
- 관련 사업 생산 라인, 기능 및 경력 보유
-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한 조직 및 운영 모델, 물류 서비스
 -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서비스 사용자를 제공하는 거래자 또는 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매뉴얼 명시

[자료: 52/2013/ND-CP]

따라서 진출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잘로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됩니까?

A3.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85/2021/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종류>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기 위한 온라인 상점 부스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고객들과 계약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웹사이트에 구매 및 판매 섹션이 있어 사용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정보 게시가 가능하다.
- 위 항목 1,2,3에 명시된 활동 형태 중 한 개 이상의 형태를 소유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자료: 85/2021/ND-CP]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운영 형태 외에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베트남의 대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페이스북, 잘로, 인스타그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얻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과세의무를 수행하고 베트남에 등록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및 기업 판매자의 수익도 과세를 하기 원한다. Grab(싱가포르), Netflix(미국), Facebook(미국), Shopee(싱가포르), Lazada(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기업 및 수익 발생 업체들은 이에 따라 베트남이 규정하는 신규 규정에 맞게 운영 형태를 일부 수정하고 수익금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기 규정들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사업 환경을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 기업보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금납부 의무를 피해갈 방법이 많았던 기존 규정과 비교해 베트남 현지기업과 해외 거대기업이 조금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현지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현지 컨설팅펌의 한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성상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 및 투자 거래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베트남 IT 5대기업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기업에는 현지기업이 국가 보안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M&A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변화하는 규정에 잘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과 M&A를 진행하는 경우 지분 취득을 위한 조건을 면밀히 계산하고 이를 계약 과정에 모두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M&A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 작성: Tuan Nguyen

자료: VIETNAM E-TRADE IN 2021(iDEA), New regulations on e-commerce activities in Vietnam(Venture North Law), 85/2021/ND-CP, 52/2013/ND-CP, 126/2020/ND-CP, 98/2020/ND-C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